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이 연구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에게 연구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준용된다.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과 본 학회 규정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 활동은 기획과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 성과의 보급 등을 포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제4조

연구자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연구 활동이 공익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자는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여 연구 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모든 연구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보고하고,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정보를 위조, 조작,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견과 예단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발표 및 연구윤리교육

제6조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한 재정 지출, 연구 참여자 교육,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협약 체결, 연구비 수주와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한다.
3. 연구책임자는 법령 및 본 학회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사회적 위험과 윤리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5.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사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다른 연구자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과정에서 인용출처와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에서 인용하여야 하며 미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저자는 타인의 이론적 견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저자는 널리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수용된 생각, 사실, 공식,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권장된다.

제8조

저자란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를 말한다.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모든 저자의 연구역할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3. 저자 결정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분야별로 따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자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공동저자의 결정은 연구결과 발표 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를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연구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0조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발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이나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고의로 변형·삭제·누락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학문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술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이러한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이나 "중복 게재"는 자신이 생산한 기존의 연구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명시적인 설명이나 인용 없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부적절한 연구행위, 부적절한 집필행위, 부적절한 심사행위 등을 말한다.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제10조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행위
2. 논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재인용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행위
4. 읽지 않은 저술의 출처를 인용하는 행위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자신의 텍스트를 적절한 언급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7.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12조

심사자가 타인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자는 모든 논문심사에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사요청서에 따른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심사행위에 해당한다.
 - 가. 심사과제를 타인에게 부탁하여 심사하게 하는 행위
 - 나. 심사 중인 논문이나 연구제안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 다.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읽지 않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심사·평가하는 행위
 - 라.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또는 학연, 지연 등의 사적 관계에 의해 연구를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
 - 마.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4장 연구부정행위 처리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실시는 학회 회원 또는 관계당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특정 연구자의 특정연구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논문이나 저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계의 전문가들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회장이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 처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4.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2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나, 조사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예비조사는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가. 심의요청 내용이 제10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심의요청 내용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3.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 본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제보 내용
 - 나.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 다.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라. 관련 증거 및 증인
 - 마.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바. 조사위원 명단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주의,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로 결정이 내려진 연구는 본 학회 학술지의 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사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본 연구 윤리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 6월 30일 이사회에서 1차 개정
3. 2013년 3월 16일 총회에서 2차 개정
4.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3차 개정
5. 2018년 2월 24일 총회에서 4차 개정
6. 2018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5차 개정
7. 2019년 3월 16일 총회에서 6차 개정